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피해자 조력 강화 -
-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 모집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 [3.19일 보도자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 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고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수)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 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14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 www.klaw.or.kr - 변호사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변호사 채용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어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2. 환자대변인 모집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044-202-2474)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개요) 의료분쟁 감정·조정 등 과정에서 조정 등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조력자(변호사)를 지원해 법적·의학적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 * 중재사건의 경우 분쟁의 양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보건의료인)
- (지원내용) 감정·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대변인 조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 신청 시 함께 신청 → 중재원 추천 및 매칭을 거쳐 대변인 선정 및 지원
- (대변인 운영)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대변인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윤리서약 등을 거쳐 운영
 - 50인 내외를 선발해 대변인 풀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대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표창 수여,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인정 및 의무교육 추진 등 지원
- (예산) '25년, 국비 3억원
- (운영방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탁 수행

◆ 의료분쟁 조정이란?

- (개요)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 의료사고 감정 → 조정 또는 합의
- (효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특례 적용

- (모집시기) 4월 14일(월) 09:00부터 4월 30일(수) 18:00까지
- (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로 의료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촉
 - * 의료 전문분야, 의료 관련 사건 수행여부, 전직 조정중재원 감정·조정위원 등
 - 공고일 기준('25.4.14) 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파일(PDF)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메일(medi@k-medi.or.kr) 접수
- (신청 서류) 대변인 위촉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3년 이상 경력, 의료 분야 전문성, 무징계증명원 등)
- (주요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총괄팀(02-6210-0334)
- (선발 일정) 5월 중, 자격 확인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위촉할 예정
이며, 위촉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

◆ 동 개요 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의 공고문 참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 www.klaw.or.kr - 변호사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변호사 채용